

# 연금저축계좌 핵심 설명서

[2024. 3. 4.]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연금저축계좌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연금저축계좌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**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일반 예금성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**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은 **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**을 받을 수 있는 **장기 투자상품**이며 **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**

◇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**세액공제**를, ②연금수령 시에는 **연금소득세** 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적용<sup>1)</sup>받게 되어 **유용**할 수 있습니다. (☞다만 **연금수령**이란, **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**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)

1)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: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

• **세액공제** :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에서 13.2%<sup>1)</sup> 또는 16.5%<sup>2)</sup> **세액공제**를 적용
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**초과인** 경우

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**이하인** 경우

• **연금수령** **요건**(연금소득세 적용)

1) 가입후 **5년** 경과하고 **만55세 이후** 연금수령을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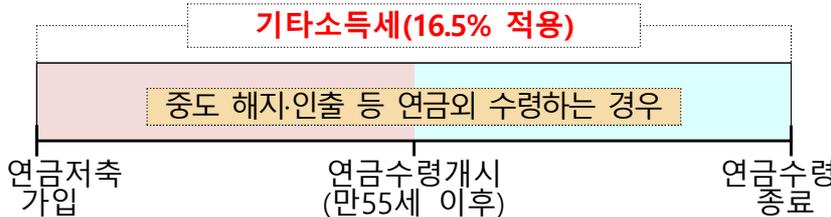
2) 매년 **연금수령한도** 이내에서 인출할 것

연금수령 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 ÷ (11 - 연금수령연차) × 1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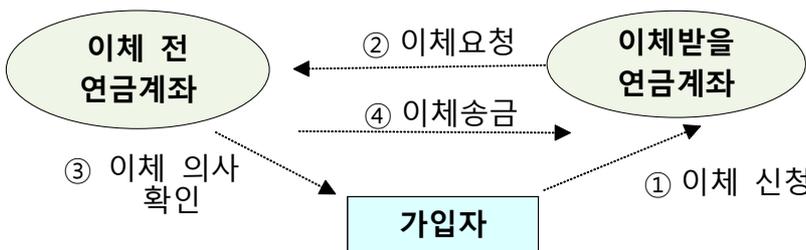


◇ **중도 해지**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"연금외 수령")의 경우 **기타소득세** (16.5% 지방세 포함)가 부과<sup>1)</sup>되므로 **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(5.5~3.3%)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1)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: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+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



◇ 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하며,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**세제 상 불이익이 없습니다.**



##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

### ■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구 분	내 용
상품 특징	-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<b>납입액 중 600만원</b> 한도 내에서 13.2% <sup>1)</sup> 또는 16.5% <sup>2)</sup> 의 세액공제를 적용 (지방소득세포함) -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연금수령	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
연금수령한도	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
연금외수령	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
가입대상	제한 없음
연 납입한도	<b>일반 납입액 1,800만원 +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+ 주택차액 1억원</b> (전 금융기관 합산,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세액공제	당해연도 납입액의 13.2% <sup>1)</sup> 또는 16.5% <sup>2)</sup>
보수, 수수료	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
계좌 이체	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
계좌 승계	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
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초과인 경우  
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### 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(금융권역별 상품특징)

구 분	은 행	증권사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 품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펀드계좌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종신, 확정	확정(~25년)
예금자보호법	적 용	적용되지 않음	적 용	적 용

### ■ 투자위험등급

고객님께서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에서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편입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(연금저축계좌 세제 등)

구 분	납입시	연금외수령시	연금수령*시
세제종류	소득·세액공제 혜택	기타소득세 (16.5%, 지방세포함)	연금소득세 (5.5~3.3%, 지방세포함) *의료비, 부득이한 사유 포함

- ①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.(소득세액공제확인서)
- ②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제외)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,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(6.6~49.5%)과 단일세율(16.5%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,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% 또는 70%를 부과합니다.
- ④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bnknfn.co.kr>) 또는 고객센터(1577-26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

# 연금저축계좌 설명서

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연금저축계좌
- 상품특징 :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,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
## 2.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

구 분	내 용								
계좌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금저축펀드 : 자본시장법(§12조)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개계약 ⇨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통해 가입</li> <li>- 연금저축보험 : 보험업법(§4조)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⇨ 보험회사 통해 가입</li> </ul>								
가입 대상	제한 없음								
납입 한도	<p><b>연간 1,800만원<sup>1)</sup> +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<sup>2)</sup></b></p> <p>1)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계좌 합산</p> <p>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<b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ISA)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</b>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</p> <p>※ (참고)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</li> <li>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</li> </ul>								
세액공제	<p><b>연간 600만원(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) + ISA 전환금액의 10%(300만원 한도)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</th> <th>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</th> <th>세액 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600만원</b></td> <td>16.5%</td> </tr> <tr> <td>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</td> <td>13.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) '22년 이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<b>300만원 또는 400만원</b></p> <p>2) '23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<b>600만원</b>으로 인상</p>	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	세액 공제율	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<b>600만원</b>	16.5%	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13.2%
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	세액 공제율							
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<b>600만원</b>	16.5%							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	13.2%							

### 3.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

구 분	내 용
운용방법	① <b>연금저축 보험</b> : 사전에 금융회사에 의해 설계된 방식에 따라 운용 ② <b>연금저축펀드계좌</b> : 가입자는 계좌내에서 <b>다양한 펀드</b> 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<b>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</b> -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저축전용펀드(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) 및 ETF(인버스·레버리지는 금지)에 한하여 편입가능
보수 및 수수료	개별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고
계좌이체	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<b>다른 연금계좌로 이체</b> 되는 경우 <b>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</b> - 서로 다른 종류(신탁, 펀드, 보험)간의 이체도 가능하며,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① 연금계좌('01.1월 이후 개설)에서 타 연금저축계좌('13.3월 이후 개설)로의 전액이체 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(이하 개인형IRP)로 전액이체 ③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
계좌승계	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<b>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</b> -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 -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(상속인)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

### 4. 연금 수령 및 인출

구 분	내 용
연금수령	① <b>연금수령 요건</b> : <b>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</b> 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 -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<b>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</b> -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,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, 금액, 환매순서 등을 지정 ※ 연금저축펀드, 00계좌는 내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 가능함(-> 은행연합회, 보험협회 확인 필요) ② <b>연금수령한도</b> : 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,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'연금외수령'에 해당 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^{1)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^{2)})} \times \frac{120}{100}$ 1) 연금저축 신탁펀드 : 기준가x누적좌수, 연금저축보험 : 책임준비금 2)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,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

- ① **일반적인 경우** :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**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** ⇨ **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**
- ② **부득이한 사유의 경우** :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⇨ **연금수령으로 간주**
- 신청시기 :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
  -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

부득이한 사유	인출한도
천재지변	X
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	X
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<sup>1)</sup>
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O <sup>1)</sup>
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	X
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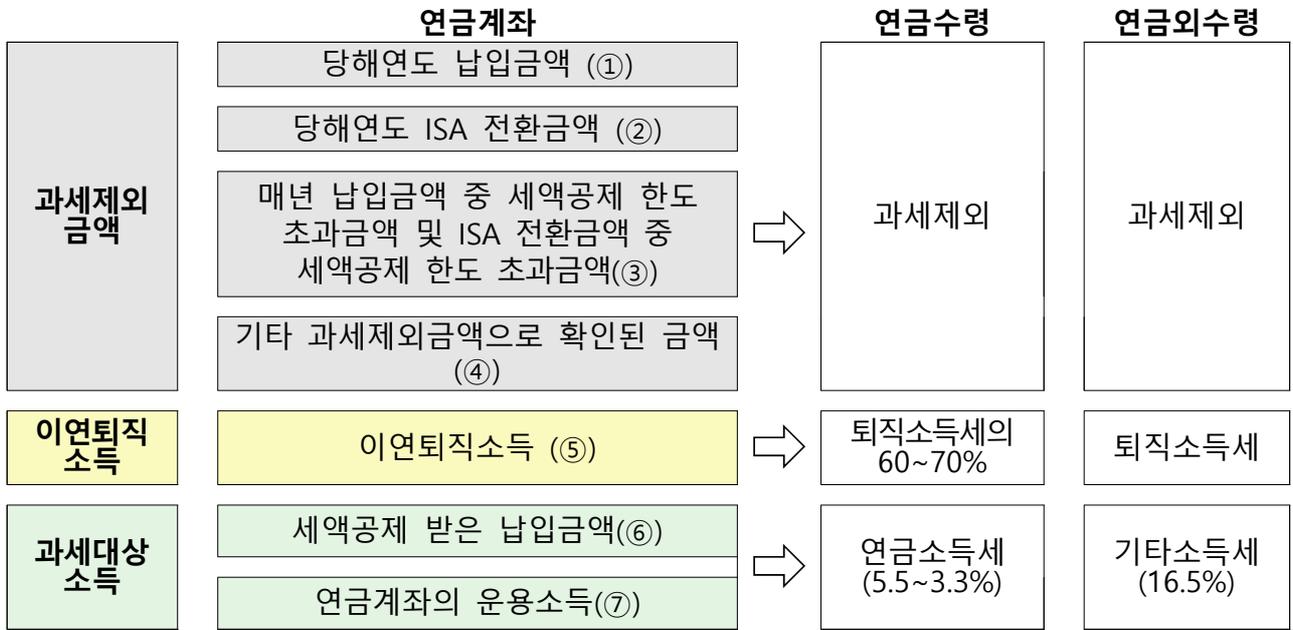
- 1)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 
 (ㄱ)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
 (ㄴ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)x150만원  
 (ㄷ) 200만원

## 5. 적용세제

- ① 연금저축계좌를 **연금외수령**하는 경우, **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**가 적용됩니다.  
 ② 연금저축계좌의 **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**하시기 바랍니다.  
 ③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'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
자금인출 순서	<p>①과세제외금액 → ②이연퇴직소득 → ③과세대상소득(세액공제 받은 금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</p> <p>※ (참고)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(ISA 전환금액 제외)</li> <li>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된 금액</li> <li>③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(600만원)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</li> <li>④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(‘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’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)</li> </ul>																
연금수령	<p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p> <p>② <b>이연퇴직소득</b> : 이연퇴직소득세액의 <b>70%</b>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         * 단,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, 60%</p> <p>③ <b>과세대상소득</b> : 연금소득세(3.3%~5.5%)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확정형연금</th> <th>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</td> <td>만70세 미만</td> <td>5.5%</td> </tr> <tr> <td>만80세 미만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만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<b>1500만원 초과 시, 종합소득세율(6.6~49.5%) 또는 단일세율(16.5%) 적용하여 종합과세</b></p>	구 분	확정형연금	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	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70세 미만	5.5%	만80세 미만	4.4%	만80세 이상	3.3%			4.4%			3.3%
구 분	확정형연금	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															
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70세 미만	5.5%															
	만80세 미만	4.4%															
	만80세 이상	3.3%															
		4.4%															
		3.3%															
연금외수령	<p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p> <p>② <b>이연퇴직소득</b> : 퇴직소득세 <b>100%</b> 부과</p> <p>③ <b>과세대상소득</b> : 기타소득세 <b>16.5%</b> 적용</p>																

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



☞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임

6. 가입자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펀드계좌는 **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**
- 금융회사, 금융감독원, 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7. 금융소비자의 권리

①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②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**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설명직원 이행확인	(주)BNK투자증권 ( )지점 _____은(는) 상기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_____고객님께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.		
	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
	판매직원	직위 :	이름 : _____ (서명)

## ※ 연금저축 적립금 수령방식에 따른 과세 안내(예시)

### 1.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

(1) 고객님의 연금저축계좌에 5년 이상\*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, 적립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\*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

$$\text{연간 최대 수령 가능금액} : \frac{\text{연금저축의 평가액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\frac{120}{100}$$

※ 상기 산식에 따른 연간 최대 수령 가능금액 이내에서 수령하여야 연금소득세(5.5 ~ 3.3%)로 과세되며, 초과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(16.5%)로 과세됩니다.

(예시) 연금저축 평가액 : 4,000만원, 올해 연금수령연차 1년차인 경우  
올해 연금 최대 수령가능금액 : 480만원(=4,000만원÷10×120%)

☞ 올해 480만원까지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를, 초과액은 기타소득세를 부과

(2)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아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\*됩니다.

\*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
연령	연금소득세율			수령 연차	이연퇴직소득세율	
	70세 미만	70세 이상 80세 미만	80세 이상		10년 이하	10년 초과
세율	5.5%	4.4%	3.3%	세율	퇴직소득세의 70%	퇴직소득세의 60%

(3) 고객님의 다른 연금계좌(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限)를 포함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**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,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(6.6~49.5%)과 단일세율(16.5%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.**

### 2.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

고객님께서 '연금 형태'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,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(16.5%)로 과세\*됩니다.

\* 이연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(6~42%)로 과세

3. 기타 사항 :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던 금액은 인출(연금 또는 일시금) 형태와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.